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 4. 11(월) 평창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 회부일자 : 2016. 04. 14(목)
- 상정일자 : 2016. 04. 27(수) 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오정희)

-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6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6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음.
-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 안 제4조는 사업비 신청 및 정산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적십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토 결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서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 지역사회 복지증진 관련 활동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활동

제4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